복지규정

제 정 2006. 5. 26 개 정(1) 2007. 5. 1 개 정(2) 2007. 7. 9 개 정(3) 2008. 10. 17 개 정(4) 2014. 3. 3 개 정(5) 2014. 7. 18 개 정(6) 2018. 12. 13 개 정(7) 2019. 10. 23 개 정(8) 2020. 9. 29 개 정(9) 2022. 12.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리증진과 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및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건강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상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해외현지 직원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2장 안전과 보건

제3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의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사담당부문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5조(안전 및 위생교육) 직원은 채용할 때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 시로 담당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 및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제3장 체육

- **제6조(직장체육진흥)** 직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7조(체육행사등) ①직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설치 또는 임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취미·오락등 직원의 개별적인 상호친목활동의 경우를 제외한 공식적인 대내외행사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경비는 공사에서 부담할 수 있다.
 - ③직원의 체육 및 교양활동과 상호친목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장소, 시설 및 차량운행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장 후생

- 제8조(학자금 대여) ①직원의 학자금부담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생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대여할 수 있다.
 - ②학자금 대여기준은 인사담당부문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9조(경조금지급) 직원 경조시에는 인사담당부문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료비 지원) ①공사는 직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료비를 보조할 수 있다.
- ②의료비 지원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은 인사담당부문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콘도미니엄회원권)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구입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기타 복지 지워) 직원의 복지를 위하여 각종 복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재해보상

제13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발생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인사담당부문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제14조(재해부조) 직원의 수재·화재 기타 비상재해에 대하여는 인사담당부문장이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부조를 행할 수 있다.

제15조(암 및 상해보험 가입지원) 공사는 직원을 위해 암 및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1. 1부터 소급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1조 가계안정자금 대여 시행 시기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경과조치) 시행일 전일 현재 내부 품의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9부터 시행한다.

부칙(3)

제1조(가계안정자금 대여 시행일) 가계안정자금 대여는 2007.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10. 17부터 시행한다.

부칙(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3. 3부터 시행한다.

부칙(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7. 18부터 시행한다.

부칙(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12. 13부터 시행한다.

부칙(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0. 23.부터 시행한다.

부칙(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 9. 29.부터 시행한다.

부칙(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 12. 22.부터 시행한다.